



제 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건축물미술작품 관리 제도 정비 〉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367호)

2025.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건축물미술작품 관리 제도 정비(안 제9조의3제4항 및 제42조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미애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1. 9.

다. 회 부 일 : 2025. 1.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미술작품의 실태를 점검하고 훼손·분실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의 원상회복 또는 보수·철거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주가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훼손·분실 등이 된 미술작품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실효성 있는 미술작품 관리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주가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 후 그 비용을 건축주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술작품 관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제4항 및 제42조 신설).

Ⅲ. 검토의견

1. 건축물미술작품 관리 제도 정비(안 제9조의3제4항 및 제42조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 미술작품의 관리를 위해 행한 원상회복 조치 또는 보수·철거 조치 명령을 건축주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안 제9조의3제4항 신설).
-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 또는 보수·철거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함(안 제42조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3(미술작품의 관리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9조의3(미술작품의 관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제1호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u>

④ (생략) <u><신설></u> <u><신설></u>	<u>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u> <u>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u> <u>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u> <u>있다.</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u>제7장 벌칙</u> <u>제42조(과태료) ① 제9조의3제3</u> <u>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을</u> <u>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u> <u>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u> <u>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 <u>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u>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u> <u>징수한다.</u>
---	--

다. 검토사항

○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¹⁾에 따라 연면적 1만 제곱

- 1)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조각·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 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 제2항에 따른 건축비용, 기금 출연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건축물미술작품”이라 한다)은 법 제9조의2에

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집회장·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방송통신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함.

- 또한, 건축주는 건축물 미술작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술작품의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점검 결과에 따라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된 경우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전제로 원상회복 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미

따라 감정·평가를 거쳐 설치한 다음 각 호의 미술작품으로 한다.

1.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2. 분수대 등 건축물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의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사목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③ 법 제9조제1항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이하 생략)

미술작품의 위치, 형태, 노후화 등 사유로 보수·철거가 불가피할 경우 보수·철거 조치를 명령할 수 있음²⁾.

○ 그러나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철거·훼손되거나 보수가 시급한 미술작품 등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사례가 발생³⁾하고 있어, 건축물 미술작품의 후속 관리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법 제9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조치 명령에 건축주가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제9조의3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 명령 불응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 책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 환경을 조성할 수 있

2)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3(미술작품의 관리 등) ① 건축주(미술작품의 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미술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술작품의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명령을 받은 건축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된 경우: 원상회복 조치.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술작품의 위치, 형태, 노후화 등의 사유로 보수 또는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수 또는 철거 조치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실태의 점검, 기록·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제신문, ‘1% 공공미술 설치법만 있고 관리法 없다’, 2024.11.26.

울산매일신보, ‘울산 건축물 미술작품 느는데, 관리 안돼 도심홍물 전락’, 2024.6.11.

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건축물 미술작품은 법령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건축주가 직접 작가에 의뢰하여 설치하는 건축주 소유의 사유재산이자 작품의 작가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로 대집행 과정에서 소유주와 작가의 소유권 및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할 때 소유주·작가 등 관련 주체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과태료의 보완적인 수단으로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의무이행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이와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 의무불이행을 사유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함께 부과할 경우 금전적인 제재가 중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과태료 규정의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안 제9조의3 행정대집행 규정 신설을 수용하면서도 행정대집행으로 미술작품과 관련한 작가 및 건축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일회적인 과태료 부과보다는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경기도는 미술작품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는 건축주에게 귀책이 있는 경우에만 명령할 수 있어 건축주의 귀책 여부를 판단하여 대집행을 결정하기가 곤란할 수 있으며, 공공주택의 경우 분양 후에는 주민 또는 관리소장이 작품의 관리 주체가 되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행 조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79